

전부개정	2017.11.20.	내규 제04-105호
개정	2018.06.05.	내규 제04-114호
개정	2018.12.27.	내규 제04-119호
개정	2019.11.20.	내규 제04-135호
개정	2020.03.20.	내규 제04-149호
개정	2021.01.29.	내규 제04-167호
개정	2021.04.28.	내규 제04-177호
개정	2021.12.27.	내규 제04-187호
개정	2023.01.02.	내규 제04-206호
전부개정	2026.03.06.	내규 제04-244호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제1장	총 칙	1
------------	------------	----------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추진근거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2
------------	----------------	----------

제5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제6조 창업지원기관	2
제7조 중앙운영위원회	3
제8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6
제9조 창업팀	6
제10조 졸업팀	7

제3장	창업지원기관	7
------------	---------------	----------

제11조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및 운영원칙	7
제12조 모집분야	8
제13조 신청방법	8
제14조 입찰참가 자격	8
제15조 심사 및 계약 방법	8
제16조 계약의 해지	9

제4장	창업팀	9
------------	------------	----------

제17조	신청자격	9
제18조	신청방법	11
제19조	심사방법	11
제20조	최종선정	12
제21조	추가모집	12

제5장	협약체결	13
------------	-------------	-----------

제22조	협약의 체결	13
제23조	협약의 변경	13
제24조	협약기간	13
제25조	협약의 해지	13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14
------------	---------------------	-----------

제26조	사업비의 구성	14
제27조	창업지원기관 용역사업비 교부 및 집행	15
제28조	창업팀 지원금 교부	15
제29조	창업팀 지원금 집행	16
제30조	창업팀 지원금 관리	16
제31조	창업팀 지원금의 정산	17
제32조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18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18
------------	--------------------	-----------

제33조	사업추진현황 점검	18
제34조	창업지원기관 성과평가	18
제35조	창업팀 중간평가	18
제36조	창업팀 최종평가 및 제재조치	19
제37조	창업지원기관 최종보고	20
제38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21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21
------------	------------------	-----------

제39조	창업팀 제재등급 및 대상	21
제40조	창업팀 지원금의 환수	21
제41조	기타 제재조치	22
제42조	창업유지 등	22
제43조	비밀유지의무	23
제44조	기타 행정사항	23
제45조	해석	24
제46조	관련 규정의 준수	24
[부칙]		24

[관련 서식]

* 아래의 서식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제1호] 창업팀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제재등급	26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28
[별표 제3호] 창업지원기관 지원인력 구성요건 및 역할	29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협약서	31
[별지 제2호 서식] 창업팀 이의제기 신청서	35
[별지 제3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서 및 각서	36
[별지 제4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검토의견서	37
[별지 제5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지원중단) 총괄표	38
[별지 제6호 서식]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보안 및 청렴서약서 ...	39
[별지 제7호 서식] 심사 회피 신청서	40

제1조(목적) 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창업·재창업 및 전환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재창업 및 전환 지원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자금 및 교육·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업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추진근거) 창업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제1호(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그 추진근거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팀』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창업지원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팀을 말한다. 창업팀은 경영형태·사업이력·업력·사회적 목적 내재화 수준에 따라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된다.
2. 『졸업팀』이라 함은 진흥원이 운영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11년~’23년)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26년 이후)에 참여(협약종료기간까지)한 창업팀을 말한다.

3. 『창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창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으로, 주요 역할에 따라 권역지원기관 또는 업종(특화)지원 기관으로 구분된다.
 - 가. 『권역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팀 발굴부터 사업화·(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후속성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며, 졸업팀의 사후관리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나. 『업종(특화)지원기관』이라 함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창업팀의 창업·성장지원에 집중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라 함은 창업팀의 심사·선정·평가·성과관리 등 현장 집행 단계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중앙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재 및 이의신청 심의, 정책·운영기준 개선 등 제도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기준의 제시 등 총괄 조정
2. 사업의 운영, 평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3.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창업지원기관 선정, 역량강화, 점검·평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5. 창업지원사업 홍보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창업지원기관) 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공통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팀 발굴·모집, 선정 및 협약체결
2. 창업팀 관리, 정기 및 전문 멘토링
3. 창업팀 사업화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로드맵 수립과 전환 지원
4. 창업팀 판로·투자 행사 운영
5. 창업팀 지원금 회계정산에 대한 지원(위탁 정산 포함)
6. 창업팀 지원금 지급 대행
7.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소셜클래스)과 연계한 창업팀 공통 의무 교육 운영
8. 창업팀 만족도조사(연 2회), 후속지원과 사후관리
9. 사업성과 관리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 및 DB관리
10.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창업지원기관 중 권역지원기관은 공통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 수행한다.

1. 권역별 창업팀 교류회 및 공동포럼 개최
2. 졸업팀 DB현행화 및 전수조사,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운영(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자원연계, 기자재 관리 체계 구축 등)

③ 창업지원기관 중 업종(특화)지원기관은 공통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 수행한다.

1.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시장·투자 전문교육 및 분야별 전문 멘토링 운영
2. 업종별 협회·기업·투자기관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행사·IR 매칭 데이 운영

④ 창업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제안요청서와 본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본 지침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7조(중앙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팀 제재
2. 창업팀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3. 창업팀 선정 및 평가결과 검토
4. 창업지원기관 선정결과 검토 및 운영실적 평가
5. 창업팀 중간평가 기준
6. 정책·운영기준 개선
7. 기타 창업지원 사업 수행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진흥원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공무원·학계·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9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되, 과반수 이상은 진흥원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한다. 단, 필요시 진흥원은 위원의 변경,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대한 내용은 이하 심사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변리사 등 전문가
6. 기타 진흥원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진흥원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협약·용역·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진흥원이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⑤ 중앙운영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진흥원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해당 중앙운영위원을 해당 안전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이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⑦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공표 및 타인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가 있으며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중앙운영위원 위촉 및 심의 시 진흥원장에게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모집·선정·사업비 배정·성과평가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팀 심사 및 선정
2. 창업팀 사업비 배정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3. 기타 창업지원 사업 수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창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중앙운영위원회)를 준용하여 창업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은 창업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을 추가, 변경, 해임할 수 있다.

⑦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이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팀)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지침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이하 '회계처리기준') 숙지와 준수
2.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화계획서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창업지원기관 제출(사업 점검 진행 시)
4. 창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공통의무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
5.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6.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지원금 집행내역 등록, 집행증빙 창업지원기관 제출

7. 이력성과조사 응답 및 사업성과 보고, 만족도 조사 응답
8.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가입, 정보입력 및 업데이트 등
9.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지원금 회계정산 협조
10. 사업종료 후 3년 동안의 변동사항(창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매출 규모, 고용현황, 폐업 등)에 대해 창업지원기관과 진흥원에 보고
11.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졸업팀) ① 졸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참여 종료 이후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창업지원기관의 졸업팀 사후관리 및 기자재 관리조사 응답
 2. 진흥원의 이력성과조사 응답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졸업팀은 창업지원기관에서 졸업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창업지원기관

제11조(창업지원기관의 역할 및 운영원칙) ① 창업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창업팀의 발굴·모집·선정, 사업화 지원, 점검·사후관리 등 창업지원사업의 현장 수행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창업팀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요건과 창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정책 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지원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멘토링, 성장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이 지침, 회계처리기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팀 선정·

지원·평가 및 제재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따른다.

④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 및 지원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진흥원 또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사업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보고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월별/분기별 실적 보고서 등)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해 창업지원 기관 및 멘토의 정보, 창업팀의 정보 및 사업 수행 과정(계획서, 보고서, 평가결과 등)을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창업지원기관은 해당기관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⑧ 창업지원기관은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모집분야)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을 권역, 업종(특화)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창업수요를 반영하여 모집분야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상의 사업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나라장터에 입찰해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 자격) ① 창업지원사업 용역 수행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심사 및 계약 방법) 창업지원기관의 선정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용역 계약서 및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창업팀

제17조(신청자격) ① 창업팀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로서, 구성원 전원은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창업팀은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및 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한다. 유형별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창업형이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또는 미창업상태에서, 법인 설립·초기사업화·사업모델검증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위한 조직·사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유형을 말한다.
2. 인증전환형이란 기존 영리·비영리 법인 중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을 초과한 법인이 정관·사업모델을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게 전환하고 인증 준비를 추진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한다.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사회적 목적 중심의 정관·조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
 - 나. 매출·고용·서비스 등 사업 실적을 보유한 자
3. 재도전형이란 졸업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나 폐업·부진 등 실패를 경험한 기업이,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적기업 전환에 다시 도전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본 사업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한다.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진흥원에서 운영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11~'23년)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26년 이후)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이력을 보유한 자

나. 당해연도 창업팀 모집의 전년 말 기준으로, '가'의 법인을 폐업 하였거나, 최근 3개년 회계연도 기준의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실패를 경험한 자

③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반납·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표자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구성원 (대표자 포함)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전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되, 과거 '제도전창업팀'('18~'22년)으로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⑤ 창업팀의 대표가 신청한 창업팀 이외의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 가능하다.

⑥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또는 창업팀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 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5.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협약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참여 가능

6.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7.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⑦ 창업팀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제18조(신청방법) ① 창업팀으로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창업지원 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구체적인 모집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대사항 등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 ③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창업팀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팀은 이에 응해야한다.
- ④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이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방법) ①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창업팀 중복지원·참여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참여에 문제가 없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심층면접·대면심사 3단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선정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선발 예상 창업팀의 1.2배수 이상의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2. 심층면접: 창업지원기관(담임멘토)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 역량 등을 파악하여 창업팀 최종선정 심사 점수에 20%를 반영
3. 대면심사: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PT 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③ 서류 및 대면심사는 공고문 상 심사표를 기준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의 핵심 역량 분야에 따라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30% 배점 내에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는 창업팀 심사 및 선정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심의 및 운영 절차를 검토·확인한다. 검토 결과 공정성 또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재심의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0조(최종선정) ① 창업지원기관은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대면심사를 거쳐 창업팀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단, 창업팀의 중도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창업팀과의 최초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순위 후보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순위의 순서를 따라야 하며, 상위 순위 후보팀이 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 후보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추가모집) ① 진흥원은 창업팀이 지원규모에 미달하거나, 중도포기·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창업팀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에 따라 예비후보 창업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여 창업팀 추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선발 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최종 추가선발 결과를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가모집의 경우 예비순위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추가모집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참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5장

협약 체결

제22조(협약의 체결)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업팀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따라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창업팀에게 교부할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에게 협약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승인여부를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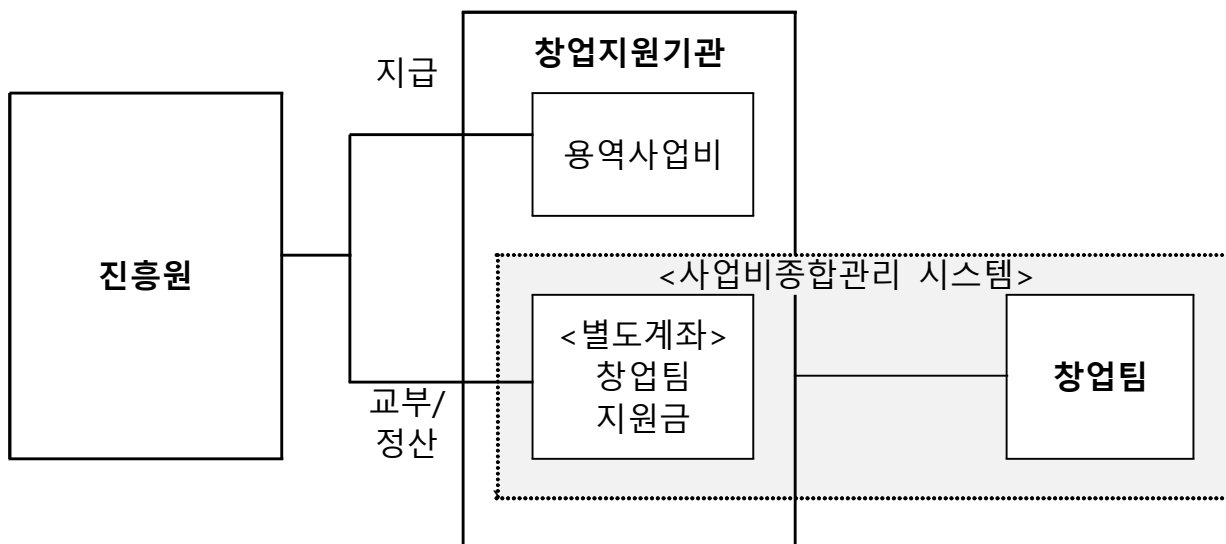
제24조(협약기간)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간의 용역수행 계약 종료일 이내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지) 창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진흥원에게 보고한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해당 창업팀에 대해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중도포기 및 휴·폐업, 해산 등)
3.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지원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5. 창업팀이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이 결정된 경우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제26조(사업비의 구성) ①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는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사업비와 진흥원을 통해 전달받은 창업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창업팀 지원금은 진흥원 책임하에 진흥원이 창업팀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이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 대한 교부를 대행한다.

② 창업팀 지원금은 창업지원기관의 용역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기관과 협약한 창업팀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지원기관 용역사업비와 창업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서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전자 기록을 상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창업지원기관 용역사업비 교부 및 집행) ① 용역사업비는 계

약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교부한다. 단, 산출내역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사업비 중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여비 등)은 창업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되, 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 진흥원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28조(창업팀 지원금 교부) ① 창업팀 지원금은 진흥원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창업지원기관이 수령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창업팀에게 교부한다. 창업지원기관은 지원금을 지원금 전용 계좌(기관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창업팀 유형별 표준 지원 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초기창업형 5,000만원

나. 인증전환형 2,000만원

다. 재도전형 4,000만원

2.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과의 최초 협약 시, 창업팀 유형에 따라 아래 각 목의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가. 초기창업형 2,500만원

나. 인증전환형 1,000만원

다. 재도전형 2,000만원

3. 창업지원기관은 중간평가 이후, 제1항 제1호의 창업팀 유형별 표준 지원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추가로 교부한다. 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제1항 제1호의 창업팀 유형별 표준지원금보다 감액 또는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증액하여 지급할 경우, 유형별 지원금 총액은 아래 각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초기창업형 8,000만원

나. 인증전환형 3,000만원

다. 재도전형 6,000만원

4. 창업지원기관은 필요시 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최초 협약금인 제1항 제2호보다 작은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창업팀 지원금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창업지원기관의 별도 계좌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은 동 계좌에서 각 창업팀의 시스템 연동 계좌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용내역을 확인·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창업팀 지원금 집행) ① 창업팀은 창업팀 지원금을 집행하기 전, 집행 예정내역에 대해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집행은 불인정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제2항의 승인 주체인 진흥원은 승인 권한을 진흥원과 계약한 외부 법인(회계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 승인한 건은 진흥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창업팀 구성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간 거래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지원금 사용 불가
2. 창업팀 구성원이 대표이거나 재직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해당 기업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 소속된 단체 포함)과의 거래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당해연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창업팀 간 거래
4.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당해연도)

제30조(창업팀 지원금 관리) ① 창업팀 지원금의 예산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는 집행은 불인정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주체인 진흥원은 승인 권한을 진흥원과 계약한 외부 법인(회계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 승인한 건은 진흥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창업팀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의 승인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은 기관과 협약한 창업팀의 지원금 집행내역(증빙자료

포함), 집행률, 집행 저조사유 등을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은 사업기간 중 부실사업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창업팀 지원금의 추가 교부 및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교부·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지원금을 진흥원을 대신하여 보관·관리하며 창업팀에게 지급을 대행하는 수탁 업무만을 수행한다. 해당 창업 지원금은 창업지원기관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⑦ 창업팀 지원금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⑧ 창업팀 지원금은 창업지원기관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담보권 설정, 상계, 양도 등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1조(창업팀 지원금의 정산) ① 창업팀은 협약종료 후 진흥원이 정한 정산기한 내에 창업팀 지원금 사용실적 및 정산서류를 창업지원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은 기관이 직접 선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창업팀 지원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종료 이전에 기관이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최종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창업팀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창업팀 지원금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정산기한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후 창업지원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창업지원기관이 창업팀 지원금 사용실적을 진흥원에 보고할 때에는 기관별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확인한 회계정산 결과를 진흥원과 진흥원이 선정한 회계법인에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이 선정한 회계법인은 2차 정산을 실시하며, 진흥원은 창업 지원기관으로부터 회계정산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팀 지원금 환수를 추진한다. 창업팀은 집행잔액(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다), 불인정금액을 제41조에 따라 진흥원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창업팀 지원금 교부, 비목 구성 및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관리 및 정산방법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창업팀 지원금의 회계 관련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33조(사업추진현황 점검) ①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시정요구,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요구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창업지원기관 성과평가)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창업팀 중간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제28조에 따른다), 재심의 또는 보류, 지원중단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창업팀의 중간평가는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팀의 사업화계획서, 중간평가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 ③ 창업지원기관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창업지원기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창업팀 최종평가 및 제재조치) 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게 최종평가 일정을 안내하여야 하며,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팀의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창업팀의 최종평가는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팀의 최종평가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미흡 등으로 나타내며,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창업팀 최종평가 기준(안) >

구분	내용
우수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 활동 미수행 - 휴·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창업팀 유형(인증전환형)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양호) 및 완료(우수)

- ③ 창업지원기관은 평가 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창업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여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한다.

⑥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한다.

⑦ 창업지원기관은 제6항에 따른 제재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창업팀은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제재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이의신청서와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한다.

⑨ 진흥원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제8장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창업지원기관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창업지원기관 최종보고) 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지원금 사용 실적 및 창업팀별 사후관리·성장지원 계획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기, 세부 양식 및 작성 방법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 후 진흥원에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창업지원기관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이 최종보고서 또는 정산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수정·보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업지원기관의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처리기준, 제안요청서와 창업지원기관과 진흥원 간 협약 및 관련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문헌, 지식 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각종 대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39조(창업팀 제재등급 및 대상) ① 진흥원은 이 지침,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간·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창업팀에 대하여 【별표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는 창업팀이 제출한 서류, 진흥원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진흥원은 제재조치 대상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창업팀 등에 관한 제재사항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창업팀 지원금의 환수) ① 창업팀 지원금 환수의 사유 및 기준은 본 지침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② 창업팀은 진흥원으로부터 창업팀 지원금의 반환·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대상금액을 창업지원기관에게 이체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이를 진흥원에 이체한다. 다만, 납부

기한의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채권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창업팀 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회수금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창업팀 지원금 환수의 결정과 책임은 진흥원에 귀속하며, 창업지원기관은 환수 집행절차를 대행한다.

제41조(기타 제재조치) ①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팀 지원금 환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창업팀에 대한 창업팀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창업팀 지원금 환수는 민사절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 등으로 창업팀 지원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창업유지 등) 창업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창업팀이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경영악화, 부도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한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 및 【별표 제2호】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유지의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및 창업지원기관(운영위원회 포함) 관계자 등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기타 행정사항) ①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고용노동부 또는 진흥원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창업지원기관 또는 그가 추천하는 기여자, 창업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대상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등에 대한 신용상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창업팀 지원금 교부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과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의 이행 및 창업팀 지원금의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창업팀 지원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용역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업팀 지원금의 정산 및 환수 등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탁기관인 창업지원기관은 본 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지침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고용노동부 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46조(관련 규정의 준수) ① 창업지원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이 시행하는 본 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제안요청서(이하 ‘본 지침 등’)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 본 지침 등은 창업지원기관과 진흥원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서와 일체가 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창업지원기관은 본 지침 등에 명시된 창업팀 지원금 관리, 집행, 정산, 환수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 등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년에 시행한 사업은 기존 지침을 적용하고 2018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부터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6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창업팀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지원 중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사회적 목적 및 사업성 불투명 등의 이유로 중단 또는 폐업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상 중단되거나 귀책 사유가 창업팀에 없는 경우(질병, 사망 등)	면제	
	☐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포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 천재지변, 건강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해당 창업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	집행 잔액 환수
	☐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창업팀 대표 또는 구성원의 취업·복직 ○ 사유가 사업 추진 이전부터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창업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최종 평가	☐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사업비	☐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 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횡령, 편취 등 사업비를 고의로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5년	집행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전용한 금액이 사업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1차에 한해 주의 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잔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다시 지급하여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면제	해당 금액 환수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년	해당 금액 환수
	□ 기자재 구입 후 취득 시점부터 5년 내 임의처분한 경우	1년	해당 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해당 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 금액 환수
	□ 협약 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해당 없음
	○ 경영악화, 부도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해당 없음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

* 사업비 전액 환수는 사업 수행 시 집행한 금액을 포함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 평가 및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가결과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의 절차

- ☐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창업팀(참여신청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해 「창업팀(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는 창업팀의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이의제기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신청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 대표에게 통보한다.

5.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 ☐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별표 제3호] 창업지원기관 지원인력 구성요건 및 역할

지원인력	구분	역할 및 자격요건
총괄 책임자	자격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자
	구성요건	• 총괄책임자는 매니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역할	권역지원기관 • 기관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예산집행, 성과관리 진흥원 보고 등 기관 운영 전반 총괄 • 창업지원과 사후관리 기능이 통합된 조직 내 협업체계 총괄, 창업팀-졸업팀 간 연계사업의 전략적 조정 • 권역 내 창업성과와 사후관리 성과 통합관리, 기관 정책성과 목표 달성 총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업종(특화)지원기관 • 기관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예산집행, 성과관리 진흥원 보고 등 기관 운영 전반 총괄 및 전국단위 업종특화 창업지원사업 전략적 방향 조정 • 업종별 창업지원, 사업화·시장검증 지원, 인증전환 지원 등이 연계되도록 조직 내 협업체계 총괄 • 업종별 창업성과 및 성과지표(KPI) 달성도 통합 관리, 기관 정책 목표 달성 총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매니저	자격	•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사회적기업 조직을 포함한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경력자
	구성요건	• 전담 매니저 1인은 반드시 배치
	역할	권역지원기관 • 사업비 집행·회계관리 및 교육·네트워킹 등 실무 운영 전반 • 창업팀과 졸업팀 간 공동프로그램(교육·네트워킹 등) 실행 조율, 행정·홍보·성과관리 자료 통합 관리 • 사후관리 관련 졸업팀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연계 업무 병행, 통합운영의 실무 중심 역할 수행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업종(특화)지원기관 • 사업비 집행·회계관리·교육·네트워킹 등 사업 운영 실무 전반 담당, 업종별 프로그램 일정·행정·홍보 관리 • 업종 협회·대기업·투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행사·IR 매칭데이·판로행사 등을 조율해 민관협력 기반 확대 • 멘토링·교육·평가 등 사업자료와 성과데이터 통합 관리
담임 멘토	자격	•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사회적기업 조직을 포함한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경력자
	구성요건	• 전담 담임멘토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되 전담 담임멘토 외에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

전문 멘토	역할	권역지원기관 • 창업팀에 1:1로 전담 배정되어 창업팀의 조직·경영 진단 및 성장 계획 수립, 인증요건 사전검토제 운영, 전문멘토 연계, 사회적가치(SVI) 학습 및 멤버십 연계 지원 등 수행 • 졸업팀 후속 지원 • 창업팀-졸업팀 간 멘토-멘토형 상호학습 체계 운영 * 가급적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실무 또는 컨설팅 경력자 배치 • 매니저 업무 겸직 가능 • 기타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업종(특화)지원기관 • 창업팀에 1:1로 전담 배정되어 창업팀의 조직·사업·재무·시장·사회적가치 등 진단 및 성장계획 수립, 인증요건 사전검토, 전문멘토 연계 등 전 과정의 창업단계 관리 수행 • 업종별 사업화·시장검증·판로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행 자문 제공, 월 1회 정기멘토링을 통한 사업 현황 지속 관리 • 멘토링 상담일지·보고서 기록·관리, 필요시 업종 전문멘토 자문 연계해 창업팀의 사업화·인증 전환역량 강화 * 가급적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실무 또는 컨설팅 경력자 배치 • 매니저 업무 겸직 가능 • 기타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자격	•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7년 이상 •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노무사 등 관련분야 공인 자격증 취득자 • 업종별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업계 실무자·전문가·기업 관계자* *업종(특화)지원기관에 한함
	구성요건	• ①창업·비즈니스 멘토, ②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업종별 멘토* *업종(특화)지원기관
	역할	권역지원기관 • 담임멘토의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문과 심화 멘토링 제공 • 졸업팀 후속 자문(공공조달, 사회적금융 등) 업종(특화)지원기관 • 창업팀의 필요 분야에 맞춘 심층 자문 제공 • 재무·노무·법무·브랜딩·IT·판로·투자 등 전문영역에서 사업화·시장검증·인증 준비에 필요한 심층 멘토링 수행 및 창업팀의 성장전략 수립 지원 • 업종 협회·대기업·유통사·투자기관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IR·판로·민간협력 활동을 위한 자문 제공, 창업팀의 시장진입 기반 강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 당사자

창업지원기관: (대표자:)

창 업 팀: (대표자:)

○ 사 업 명: 20 년 사회적기업 창원지원사업

○ 협약기간: 20 년 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 사 업 비: 총 원(W00,000,000)

* 협약금액의 사업비는 00,000,000원으로 한다. 단, 창업팀 중간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을 변경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사업화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창업팀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팀 육성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창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

계획서 및 창업팀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 및 조치가 필요할 경우, 창업팀에게 안내해야 하며 창업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기관은 용역사업비와 창업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창업팀은 사업비로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자재의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자산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협약종료 후에도 1년 간 기자재 관리 현황(사진 포함)을 분기별로 창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자재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창업팀이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창업팀에 해당 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창업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시기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창업지원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 이전에 창업 완료 및 최종평가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창업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창업지원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중간평가) 창업지원기관은 협약기간 중 창업팀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부실한 경우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료 제출 등)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변경)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창업팀의 중간평가 결과로 인한 협약변경 및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협약해지 등)

1.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창업팀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게 5일 이내에 진흥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1. 창업팀은 매월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창업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지침의 집행 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3. 협약기간 이후에도 창업팀 지원금 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팀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1.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사
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창업지
원기관과 창업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0000년 00월 00일

창업지원기관명:

대표자: (직인)

주 소:

창업팀명:

대표자: (인)

주 소:

창업팀 중도포기 검토의견서

창업팀		대표자	
-----	--	-----	--

확인사항	
------	--

검토의견	
------	--

기타사항	
------	--

20 년 00월 00일

작성자 :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창업팀 중도포기(지원중단) 총괄표

☐ 창업지원기관:

연번	구분	창업팀명 (대표자명)	처리 기준일*	사업비관련				비고
				총 예산	기집행 사업비	집행 잔액	회수금액**	
1	중도 포기							
2	지원 중단							

* 1) 자진포기의 경우: 포기각서 상에 명기된 작성일

2) 창업지원기관의 중단결정에 의한 경우: 해당 창업지원기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

** 운영지침 및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의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결정 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멘토 : (인)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 / 보안 및 청렴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제안 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함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본인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심사(평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편의 향응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심사 회피 신청서

① 심사명:

② 대 상:

사 유	해당 여부
1. 심사·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관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